



 금융위원회	보도자료			 금융감독원
	보도	2017.5.24(수) 조간 이후	배포	
책임자	금융위 현장지원팀장 주흥민 (02-2100-2530)	담당자	이재중 사무관 (02-2100-2531)	
	금감원 금융혁신국장 이준호 (02-3145-8201)		김홍건 팀장 (02-3145-8870)	

제 목 : 현장점검반 '17.1~4월(81~96주차) 주요 수용사례

■ '17.1.1~'17.4.30 기간중 금융개혁 현장점검반은 건의과제 1,070건중 395건을 수용(약 37% 수용률)

- ▶ 농·수협 조합 고객이 다른 조합에서도 예금 잔액증명서 발급 가능
- ▶ 금융투자회사와 계열 보험사간 파생상품 거래제약 완화
- ▶ 금융소비자가 비대면으로도 금리인하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개선
- ▶ 아파트 관리비 카드납부 수수료 결제시 SMS 알림서비스 제공
- ▶ 해외증권 발행시 국내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부담을 일부 개선
- ▶ 금융사기 피해예방을 위한 신분증 진위확인 서비스 확대

1. 현장점검반 운영 현황

- '15.4.2일 최초 현장방문 이후 '17.4월말까지 1,696개 금융회사를 방문, 총 6,206건의 건의사항을 접수
- 이 가운데 금융회사가 건의한 관행·제도개선 요구(총 4,302건)에 대해 총 2,092건을 수용(수용률 48.6%)

□ '17.1.1~'17.4.30 기간중 384개 금융회사 등을 방문하여 926명과 현장 간담회를 갖고 총 553건의 건의를 청취

< 최근('17.1.1~'17.4.30) 접수현황 >

건의사항 분류	은행·지주	보험	금융투자	비은행	합계(비중)
① 관행·제도개선	90	77	87	140	394(71%)
② 법령해석, 비조치	8	2	-	7	17(3%)
③ 현장조치	15	39	9	79	142(26%)
합 계	113	118	96	226	553(100%)

□ 동 기간 중 금융회사에 회신한 관행·제도개선 과제(총 1,070건)에서는 총 395건을 수용·회신(수용률 약 37%)

< 최근('17.1.1~'17.4.30) 회신현황 >

검토결과 분류	은행·지주	보험	금융투자	비은행	합계(비중)
① 수용	111	98	116	70	395(37%)
② 불수용	74	166	211	128	579(54%)
③ 추가 검토	24	25	29	18	96(9%)
합 계	209	289	356	216	1,070(100%)

< 현장점검 누계 실적 ('15.4.1 ~ '17.4.30) >

현장점검 인원 <small>(금융위, 금감원 합동 현장점검반 구성)</small>	24명 <small>(누적 방문인원 4,608명)</small>
방문대상 <small>(은행지주, 보험, 금투, 비은행 업권 방문)</small>	총 1,696개사 방문
현장점검 면담인원	6,296명
현장메신저 구성 <small>(금융소비자 금융개혁 체감도 제고를 위해 구성)</small>	273명
건의 <small>(금융회사, 금융소비자의 제도개선 요청 건의)</small>	총 6,206건
회신 <small>(신속·적극·성실의 자세로 적극 검토하여 회신)</small>	총 4,302건
수용률 <small>(현장조치 등을 제외한 회신대상 기준)</small>	48.6% <small>(4,302건중 2,092건 수용)</small>
비조치의견서·법령해석 접수 <small>(온라인 포함)</small>	비조치의견서 1,137건* 법령해석 963건

* 그림자규제 일괄처리 885건 포함

2. 주요 개선 내용

① 농·수협 조합 상호간 예금 잔액증명서 발급 허용

☎ 금융위 금융정책과 정태호 사무관 (02-2100-2833)

□ (건의배경) 농·수협 조합(축협 포함) 상호간 예금 잔액증명서 발급이 제한*되고 있어 지방 소재 고객들의 불편이 가중

* 「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농협조합 상호간 예금 잔액증명서 발급을 금융업의 본질적 요소로 판단하여 업무위탁을 제한

○ 특히, 방문 당일 잔액증명서가 필요한 고객들의 경우 계좌 개설점을 재차 방문하거나 계좌 이관을 해야하는 등 어려움

□ (개선) 농·수협 조합 상호간 예금 잔액증명서 발급 업무위탁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개정*(3분기)

* 예금 잔액증명서 발급 업무를 금융업의 본질적 요소에서 제외

② 금융투자회사와 계열 보험사간 파생상품 거래 제약 완화

☎ 금융위 보험과 태현수 사무관 (02-2100-2962)

□ (건의배경) 금융투자회사와 계열 보험사간 파생상품에 대한 초과 예치금*이 익영업일 이후에는 신용공여로 규정됨에 따라 양자간 거래기피 현상 등이 발생

* 파생상품 거래 일일정산 후 위탁증거금을 초과하는 예치금

○ 예치금은 금융투자회사의 고유계정과 분리되어 증권금융에 예치되고 이에 대한 이자수익도 발생하고 있어 단순 신용공여와 상이

□ (개선) 파생상품 거래시 금융투자회사와 계열 보험사간 초과 예치금은 지속기간에 관계없이 신용공여 범위에서 제외*

* 계열회사에 대한 자금지원 성격보다는 보험회사의 파생상품 거래에 부수되는 거래임을 감안하여 '16.12월 보험업 감독규정을 개정

③ 금융소비자의 비대면 금리인하 요구 허용

☎ 금감원 은행감독국 류정무 선임조사역 (02-3145-8028)

□ (건의배경) 금융소비자는 대출 당시와 비교하여 신용이 개선*된 경우 금리인하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방문 신청이 필수적이어서 불편

* 취업 등 직장변동, 신용등급 개선, 소득 및 재산 증가 등

○ 금융소비자 입장에서는 금리인하 요구의 수용 여부가 불확실한 경우에도 직접 방문해야 하는 애로 등 발생

□ (개선) 비대면 금리인하 요구권 행사는 은행권 협의 등을 거쳐 추진방안을 마련할 예정(20대 금융관행 개혁과제에 포함)

* 대면처리 업무를 모바일·인터넷 뱅킹 등에서도 제공토록 하는 온라인·비대면 금융거래 활성화과제에 포함

④ 아파트 관리비 카드 자동납부 수수료 안내 강화

☎ 금감원 상호여전감독국 남영민 선임조사역 (02-3145-7556)

□ (건의배경) 아파트 관리비 자동납부 최초 신청 시 카드사가 수수료 면제 기간을 부여하나 혜택 기간이 종료되면 수수료가 부과

○ 그러나, 고객은 종료시점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혜택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SMS 등으로 사전 안내할 필요

* 수수료 면제 기간 안내를 강화하고 기존 가입자들 에게도 SMS로 추가 안내할 필요

□ (개선) 아파트 관리비 카드납부 수수료, 통신 요금 등 카드결제 시 알림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개선('17년 4분기)

⑤ 해외증권 발행시 국내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부담을 일부 개선

☎ 금융위 공정시장과 노소영 사무관 (02-2100-2682)

□ (건의배경) 외국법인이 해외에서 증권을 발행한 경우, 자본시장법상 간주모집* 규제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가 불명확

* 해외 증권발행시, 국내 거주자가 해당 증권 등을 발행 당시 취득 가능하거나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 취득 가능한 조건으로 발행하는 경우 모집으로 간주

○ 간주모집에 해당하는 경우 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나, 외국법인은 사실상 제출 의무를 준수하기 어려움

□ (개선) '국내시장 유입 가능성이 높은' 외국법인*의 해외증권 발행에 한해 간주모집 규제를 적용하도록 개선**

* 국내에 상장한 외국법인, 발행주식의 20% 이상을 국내거주자가 보유한 외국법인

** 「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」 개정 완료('17.2월)

⑥ 금융사기 피해예방을 위한 신분증 진위확인 서비스 확대

☎ 금융위 은행과 이수암 사무관 (02-2100-2676)

□ (건의배경) 신분증 진위확인 서비스는 대면고객(지점 내방 고객)으로 제한되어 있어 금융사기 피해, 고객 불편 등을 초래

○ 대포통장 등 금융사기 피해를 최소화하고 금융거래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서비스 대상을 대면고객에서 비대면 고객으로 확대할 필요

□ (개선) 금융회사는 신분증 진위확인 서비스를 행정자치부에 신청하고 비대면 계좌개설 등에 활용 가능

* 행정자치부의 현장실사 후 문제가 없으면 사용 가능

※ '17.1.1~'17.4.30 관행·제도개선 회신과제의 상세내용은 금융규제민원포털(<http://better.fsc.go.kr>)내 금융개혁 현장점검 통합검색 시스템을 활용

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	 공민서신	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. http://www.fsc.go.kr	금융위원회 대변인 prfsc@korea.kr	 남게 들겠습니다 바르게 알려겠습니다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